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5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 박충권·안철수·송석준

김선교 · 김정재 · 김성원

박준태 · 김위상 · 이인선

고동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 여건 및 생계 유지 능력 등을 고려한 정착금 및 그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 비의 활용 가치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 문제와 사회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정착금 등의 사기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제21조의4로 하고,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정착금등수급계좌)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로금(이하 이 조에서 "정착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보호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정착금등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사유로 정착금등을 정착금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등을 지급할 수있다.
 - ② 정착금등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정착금등만이 정착금등수 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정착금등수급계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3(수급권의 보호) ① 정착금품 및 보로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② 정착금등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① ~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은 양	<u><삭 제></u>
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	
고, 압류할 수 없다.	
<u> <신 설></u>	제21조의2(정착금등수급계좌)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신
	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
	항에 따른 정착금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로금(이하 이
	조에서 "정착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보호대상자 명의의 지정
	된 계좌(이하 "정착금등수급계
	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
	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
	가피한 사유로 정착금등을 정
	착금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착금등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정착금등만이 정착

<신 설>

<u>제21조의2</u>(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생 략) 금등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 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정착금 등수급계좌 관리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수급권의 보호) ① 정 착금품 및 보로금을 받을 권리 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정착금등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21조의4(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현행 제21조의2와 같음)